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는 한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19혁명공로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3만원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2항제1호 중 “263만원”을 “276만1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81만8천원”을 “190만9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10만8천원”을 “116만3천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에 따른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제2항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으로 보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7조의4 중 “40만1천원”을 “43만1천원”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5,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3,681	5급	1,919
1급 2항	3,471	6급 1항	1,751
1급 3항	3,323	6급 2항	1,612
2급	2,955	6급 3항	1,083
3급	2,762	7급	608
4급	2,317		

2.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61만2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1,939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249
3) 부모 또는 조부모	1,906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1,681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952
3) 부모 또는 조부모	1,654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617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890
3) 부모 또는 조부모	585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

구분	월 지급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이 1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2. 가족이 2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7만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3만6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30만원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1. 상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061
2. 수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별표 3 제9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상이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41

비고: 위 지급구분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라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1. 1급 1항: 월 306만1천원
2. 1급 2항: 월 294만5천원
3. 1급 3항: 월 283만2천원
4. 2급: 월 97만9천원

[별표 5의4]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구분	월 지급액(천원)
1. 태극무공훈장	500
2. 을지무공훈장	495
3. 충무무공훈장	490
4. 화랑무공훈장	485
5. 인헌무공훈장	480

[별표 5의5]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

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기본급: 1,613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372천원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516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비고

1.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2.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위로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추가지원금은 지급대상인 경우에만 개별 지급한다.
다.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1,612	3급	1,150
1급 2항	1,612	4급	705
1급 3항	1,612	5급	307
2급	1,343	6급 1항	139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구분	월 정지금액(천원)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327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637
3) 부모 또는 조부모	294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69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40
3) 부모 또는 조부모	42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1) 배우자	9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82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정지한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생략)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u>263만원</u>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u>181만8천원</u>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u>110만8천원</u> <u><신설></u>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u>276만1천원</u> 2. ----- ----- <u>190만9천원</u> 3. ----- ----- <u>116만3천원</u> ③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에 따른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제2항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으로 보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7조의4(4·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u>40만1천원</u> 으로 한다.	제27조의4(4·19혁명공로수당) - ----- ----- <u>43만1천원</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